

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1. 27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1. 27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82호)
- 상 정 : 2007. 12. 05.(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세무과장 정대성)

가. 제안이유

- 1) 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적용시한 만료가 금년 말이므로 이에 따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
- 2)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
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(안 제6조의2)
 - 연간 종합소득 1,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,200만원
 - 주택가액 3억원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으로 함
- 2)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(안 제9조의2)
 -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로 이관
 -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정함
- 3) 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(안 제14조의2)
 - 감면기간 연장 : 2007.12.31 ⇒ 2009.12.31
 - 세율조정
 - 전방조정 자동차 : '08년 : 66%, '09년: 33% 경감
 - 기타 자동차 : '08년 : 33%, '09년 16% 경감
- 4)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(안 제7조, 제7조6호, 제7조7호, 제9조제1항제1호, 제9조제2항, 제16조, 제17조)

- 「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」 ⇒ 「도서관법」 제31조 또는 제40조(안 제7조6호)
- 「과학관육성법」 ⇒ 「과학관육성법」 제6조(안 제7조7호)

다. 관계법령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
- 「과학관육성법」
- 「지방세법」
- 「도서관법」
- 「문화재보호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「지방세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 에 따라 정비·보완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
 -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, 「사천시세 조례」에서 삭제된 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,
 - 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을 조정하고, 상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
 -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,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변 요지
이정희 위원	○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농협중 앙회 등의 범위는?	세무과장 정대성	○ 농협중앙회 등의 범위는 수협중앙 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 것임. ○ 농업협동조합은 「지방세법」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